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524호
- 발 의 자 : 채인묵 의원(찬성자 11명)
- 제출일자 : 2019년 3월 29일
- 회부일자 : 2019년 4월 3일

2. 제안이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 또한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는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개정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에 “장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어 관련 표현을 수정하며 문맥이 어색한 문구를 일부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에 “장애” 표현을 수정함(안 제22조제2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 중 “장애”라는 표현을 수정하고, 문맥이 어색한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의원(찬성자 11명)이 발의하였음.
- 현행 조례 제22조는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위원 해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 중 제2호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의 문구에 ‘장애’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동법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편의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도 비준국으로 포함되어 있는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¹⁾ 제29조는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장애인의 공적 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1)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2008.05.03.). 2012년 12월 기준 비준국 126개국.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②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다음을 포함한 장애인의 공적 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할 것

1. 국가의 공적·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비정부단체와 정당 활동 및 운영에의 참여
2.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및 지방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의 결성과 가입

2015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중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퇴직 요건을 규정한 제8조의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라는 문구에서 ‘장애’라는 표현이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라고 변경한 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사항(2015.12.31. 국회 운영위원회)

개 정 전	개 정 후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u>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u>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u>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u>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심신의 장애를 사유로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위원을 해촉하는 기준을 변경하는 동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사유에 따라 ‘장애’ 표현의 변경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와 부정적 인식을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한편 역사도시서울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는 동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상위법령 위배 및 조례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동의한다고 밝힘.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운영 개요

1 위원회 개요

근거

-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 제17조

위원회 기능

- 역사도시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역사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자문
- 역사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자문 등

위원회 구성 (최초구성 : '16. 7. 19)

- 구성인원 : 25명 이내(조례 제18조)
- 현 원 : 22명 (위촉기간 : 2018.7.19.~2020.7.18.)
 - 당연·임명직 5명 : 시장, 문화본부장, 도시재생실장, 도시계획국장, 서울역사박물관장
 - 위촉직 17명 (남 10, 여7)
- 임 기 : 2년 (연임가능)
- 분야별 구성현황

계	당연·임명직	위촉직					
		역사·문화재	도시계획	건축	민속·생활사	역사지리	시민사회단체
22	5	12	1	1	1	1	1

- 분과위원회 : 3개 분과위원회 ① 발굴·보존 ② 활용·향유 ③ 연구·교육·지역·세계

2 위원회 운영

회의개최

- 전체회의 : 연 1~2회
 - 소관 분과위원회 논의사항 보고 및 필요시 추가 논의, 결정
- 분과위원회 회의 : 필요시 수시 개최
 - 분과별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소관 이행과제의 순차 점검 및 자문

	①분과 (발굴·보존)	②분과 (활용·향유)	③분과 (연구·교육·지역·세계)
과제 수	25	20	11
해당위원 수	6	6	5

- 회의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회의안건(심의·자문 사항)

- 역사도시 기본계획 이행과제(56개) 시행에 관한 사항
- 조례 제6조(역사도시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른 시 주요 정책 자문
 - 대상 : 초기 계획수립단계 및 시행중인 사업 중 역사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절차 : 소관 사업부서 → 역사문화재과(역사도시서울위원회) 자문의뢰

3 위원회 운영실적('18년~'19.현재)

- '18년 역사도시서울위원회 회의 개최(8회)
 - 전체회의(2회) : 2.23(참석위원 11명), 12.6(참석위원 12명)
 - 역사와 함께 걷는 역사도심 재생, 달쿠샤 복원 및 활용, 의정부 터 정비계획 자문 등
 - 소위원회(1.16, 참석위원 3명) : 역사도시 서울 BI 및 홍보영상 등 자문

- 운영회의(2.12, 참석위원 3명) : 남북 교류 활성화 학술교류 추진 등
- 2,3분과위원회(6.8, 참석위원 5명) :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 활성화 방안 등
- 1분과위원회(6.14, 참석위원 3명) : 의정부 터 발굴조사 및 정비 등
- 역사도시 서울 홍보콘텐츠 기획회의(7.18, 참석위원 3명), 운영회의(10.25, 참석위원 3명, 역사도시 서울 교육 및 홍보 개선방안, 서울·평양 역사 학술회의 등 자문)

○ '19년 역사도시서울위원회 회의 개최(2회)

- 운영회의(3.22, 참석위원 4명) : 서울·평양 역사교류 학술세미나 개최(안), 의정부 터 정비계획 자문
- 운영회의(4.24 예정, 참석위원 3명) : 서울·평양 학술세미나 개최 사전회의

〈붙임2〉 역사도시서울위원회 명단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위원 명단 (18.7.19 현재)

□ 인원 : 22명(당연·임명직 5, 위촉직 17 / 남 15, 여 7) / 2018.7.19.~2020.7.18.

연번	분 야	성 명	현 직	연락처	메 일	비 고	
1	서울시		박원순	시장		위원장	
2			서정협	문화본부장	010-5346-0129	jhseo@seoul.go.kr	
3			강명훈	도시재생실장	010-5425-1558	mhkang@seoul.go.kr	
4			권기욱	도시계획국장	010-3711-1933	kkwon123@seoul.go.kr	
5			송인호	서울역사박물관장	010-6226-5166	2songinho@gmail.com	
	시의원	※ 시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천을 받아 1~2명 위촉할 계획임					
6	역사·문화재 (고고학)		이남규 부위원장	· 한국고고학회장 ·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010-5343-6375	nk67@chol.com	고고학(철기)
7	역사·문화재 (고대사)		임기환	·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010-9096-7697	kh303@snue.ac.kr	고대사(고구려)
8			권오영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010-6353-7196	koy1108@snue.ac.kr	고대사(백제) 고고학
9	역사·문화재 (고려사)		이익주	·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010-7210-2610 02-6490-2558	Ljoo@uos.ac.kr	고려사
10	역사·문화재 (고려사)		이정란	·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010-8205-8655	y8301422@gmail.com	고려사
11	역사·문화재 (조선시대)		홍순민 위원장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 대학원 교수	010-3798-9644	hsminjx@hanmail.net	조선시대사

연번	분 야	성 명	현 직	연락처	메 일	비 고
12	역사· 문화재 (조선시대)		유승희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역사데이터센터 연구원	010- 3366-1324	jiin0330@ha nmail.net	조선시대사
13	역사· 문화재 (근대사)		이영호 · 인하대학교 사학과 교수	010- 7129-2914	yholee@inha .ac.kr	근대사
14	역사· 문화재 (근대사)		서영희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010- 8156-0498	suhyh@kpu. ac.kr	
15	역사· 문화재 (근대사)		이지원 · 대림대학교 인문사회계 교수	010- 4323-4796	leejiwon519 @gmail.com	
16	역사· 문화재 (근대사)		정재정 · 서울역사지문관 ·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명예교수	010- 5667-9850	chungjj@uos .ac.kr	
17	역사· 문화재 (현대)		김수자 ·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원 교수	010- 8744-3539	soo21@ewha .ac.kr	
18	도시계획		김기호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010- 9138-2436	keyhow@uos .ac.kr	도시계획
19	건축		윤인석 ·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010- 4123-9605	yis5609@sk ku.edu	근대건축
20	민속· 생활사		함한희 · 전북대학교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 인류학과 명예교수	010- 9588-3285	hanheeh@jb nu.ac.kr	문화인류학
21	역사지리		양보경 · 대한지리학회장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010- 3333-2007	ybk@sungsh in.ac.kr	역사지리
22	사민사회 단체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010- 2297-0610	jsangbong@ hanmail.net	